

나. 주요내용

《취득재산》

(단위: m²/천원)

구 분	취 득 면 적		추정가격	비 고
	부지	건물		
계	11,186	-	458,073	2건
산림공원과	9,857	-	172,073	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
회 계 과	1,329	-	286,000	교동주민센터 주차장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【 법적검토 】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
 1. 시군에 있어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(2008.12.31개정)
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되어 있음.
-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 “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”고 되어 있음
- 검토결과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사업부지 취득건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(보조)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 용도로 307,000천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바 예산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며, 기타 이견은 없음

【 행정적 검토 】

가.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 취득

- 09년 뱀주변지역 정비사업(보조)으로 추진하는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 사업(10,000㎡이하일 경우)은 시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없으나,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내용,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나. 교동주민센터 주차장 건립 토지 취득

- 2008년 9월 1일 신축·이전한 교동 주민센터의 주차장 협소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코자하는 것으로 공법상 제한은 없으며, 현재 주차장 현황과 향후 주민 및 직원수 증감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(답변자 : 회계과장 최춘일)

-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계획은 무엇인지?(조덕희 의원)
: 연꽃을 식재하는 저수지 조성과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임
- 교동주민센터주변 토지취득은 전체 주차장 부지인지?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?, 주차장부지 일부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?(박성하 의원)
: 있음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1.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1부. 끝.